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센터는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5.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방문목욕 계약의 해제
 표준약관에 의해 '갑'(또는 '을')이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②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센터는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센터가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전월의 급여 청구를 익월 5일까지 청구후 본인부담금의 발생분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작성 송출 후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6) 5)항에 미납된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방문등 지속적인 납부 고지를 통해 연체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기초 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구 분	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부담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20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